

브레인 코퍼레이션의
자동항법소프트웨어를 위한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

본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본 계약**”)는 (i) 본건 소프트웨어 및 자동화 서비스(각각 아래 정의 됨)의 이용을 위한 특별 조건, 그리고 (ii) 캘리포니아 주 회사인 브레인 코퍼레이션(Brain Corporation, “**브레인**”) 및 브레인과 함께 본 계약에 따라 본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 받는 개인 또는 법인에 적용되는 약정의 조건을 명시한다. 브레인은 미네소타 회사인 테넨트(Tennant) (그 자회사들을 포함한다)(본 계약에서 총칭하여 “**Tennant**”)의 기술적 파트너이다. 본 계약은 “**Brain**” 또는 “**Brain OS**” 상표(각 “**Robotic Scrubber**”)에 따라 제공되는 BrainOS® 기능이 탑재된 로봇바닥청소기에 포함된 브레인의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하여 규율한다.

본 계약은 본 계약 영문본(<https://www.tennantco.com/amreula>)에 대한 국문 번역본이다. 영문본과 국문 번역본 사이에 서로 불일치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현지 법률에 따라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번역본보다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1. 본 계약의 수락

최종사용자는 (a) 본건 소프트웨어 또는 자동화 기능을 사용하거나, (b) 본 계약을 참조로 언급하고 있는 구독 계약, 주문 서류 또는 기타 법률문서(“**서비스 서류**”)를 체결함으로써 현재 참조로 언급하고 있거나 향후 구매할 로봇바닥청소기들의 접근 제한, 이용, 양도성, 보증 및 책임을 비롯한 본 계약 조건에 구속되기로 동의한다. 나아가, 본 계약을 수락함으로써 최종사용자는 자신이 최종사용자 (또는 그 고용주나 기타 최종사용자가 대신하여 동의를 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본 계약 조건에 구속시킬 권한을 가졌음을 확인 하는 바이다. 최종사용자가 테넨트가 승인한 배급사로부터 로봇바닥청소기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는, 본 계약에 따른 테넨트의 지원, 교육, 기타 의무 및 권리들은 테넨트의 단독 재량에 따라 테넨트가 승인한 배급사, 교육 파트너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임될 수 있다.

2. 자동화 서비스

최종사용자와 테넨트 간 또는 최종사용자 및 테넨트가 승인한 배급사들 사이에 체결된 관련 서비스 서류 기재 최초 계약 기간 중에 최종사용자는 다음의 서비스들(“**자동화 서비스**”)을 제공받게 된다:

2.1 **자동화 기능.** 로봇바닥청소기(Robotic Scrubber)는 로봇바닥청소기를 위해 활성화 된 본건 소프트웨어의 자동 항법 기능 및 기타 기능들을 통해 (이하 총칭하여 “**자동화 기능**”), 최종사용자가 사전 설정한 경로에 따라 청소를 할 수 있다. 최종사용자는 사전 설정 경로의 디자인에 관

한 책임 일체를 전적으로 부담한다. 자동화 기능 활성화 없이 로봇바닥청소기는 자동으로 작동할 수 없으나 수동 작동 방식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 2.2 **지원 서비스.** 테넌트는 최종사용자의 로봇바닥청소기에 대한 1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브레인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음의 본건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 즉, (a) 자동화 기능 관련 문제를 원격 진단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연결 및 지원, (b) 안전 관련 중요한 또는 신규 소프트웨어 기능을 위한 본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c) 각 로봇바닥청소기의 이용 및 작동에 관한 요약 데이터 서비스 중 해당 사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어떠한 로봇바닥청소기의 셀룰러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브레인은 본 제2.2조에 명시된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해당 로봇바닥청소기에 관하여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아가, 브레인이 자동화 서비스 지원을 위해 문자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최종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문자 커뮤니케이션의 수신에 가능한 셀룰러 서비스를 지원하는 휴대폰을 제공해야 한다.

3. 본건 소프트웨어의 이용 및 최종사용자에 의한 자동화 기능

최종사용자는 모든 로봇바닥청소기에 대해 적용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용 규칙(통틀어서, “**이용 제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3.1 최종사용자는 최종사용자와 그 직원, 대리인, 계약자 및 로봇바닥청소기의 이용을 최종사용자가 허가한 여하한 양도인 또는 기타 법인(“**피허가자들**”)에 의한 자동화 기능의 작동과 이용에 대한 책임을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다.
- 3.2 최종사용자는 본건 소프트웨어, 자동화 서비스 또는 자동화 기능을 (a) 본 계약 및 (b) 관련하여 관할권 있는 지역의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일반적으로 용납되는 관행이나 지침(미합중국 (“미국”) 안팎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전하거나, 최종사용자가 로봇바닥청소기를 구입 또는 사용하는 그 외 국가 안팎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 일체를 포함함)에 따라 허용되는 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것에 동의한다.
- 3.3 **승인된 이용.** 자동화 기능을 통해 로봇바닥청소기는 조작자가 수행한 동작들을 학습할 수 있고, 이후 해당 학습을 바탕으로 유사한 동작들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제3조의 이용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사용자와 그 피허가자들은 로봇바닥청소기와 자동화 서비스들을 “**승인된 환경**” 내 로봇바닥청소기 하단의 바닥청소기와 비슷한 크기, 디자인을 가진 수동 바닥청소기(scrubber)로 합리적인 정도로 청소가 이루어진 실내 공간들과 표면들을 청소하는데 있어서만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승인된 환경이라 함은 주의를 상기시키는 안전 표지판, 안전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기계장치 및 젖은 바닥에 관한 업계 표준 관행에 따라 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정되고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한다. 로봇바닥청소기가 자동모드로 작동하는 동안에는 로봇바닥청소기 근방의 모든 급경사면, 계단, 에스컬레이터, 이동 가능한 강단, 벼랑 등은 물리적인 울타리로 막아 두어야 한다. 최종사용자와 그 피허가자들은 자동화 서비스를 본건 소프트웨어상 제공되는 로봇바닥청소기의 이용매뉴얼, 가이드, 지침(총칭하여 “지침”)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브레인 또는 테넌트에 의해 업데이트되거나, 수정되거나, 달리 변경될 수 있다. 최종사용자는 로봇바닥청소기와 자동화 서비스가 지침에 따라서 작동하고 로봇바닥청소기의 모든 조작자들이 지침에 따라서 로봇바닥청소기와 자동화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할 책임을 부담한다.

3.4 **교육.** 테넌트는 로봇바닥청소기 및 관련 자동화 서비스의 작동 및 이용에 관하여 최종사용자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해당 교육에는 본 계약 제3조에 명시된 이용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인 작동에 관한 교육이 포함된다. 최종사용자는 로봇바닥청소기 이용을 위한 교육 완료 후 해당 교육에 따라서 모든 로봇바닥청소기 조작자들에게 로봇바닥청소기와 자동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테넌트는 추가 현장 교육 요청이 있을 시 이에 대해 비용을 부과할 권리를 보유한다.

3.5 **의료 관련 합의 규정.** 의료 시설에서의 로봇바닥청소기와 자동화 서비스의 이용은 <https://www.braincorp.com/eula-healthcare-supplement-jn76sz12/>에서 확인 가능한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상 의료 관련 보충 합의의 추가적인 조건들에 따라 규율된다. “의료 시설”이라 함은 신체 질병, 질환, 부상 또는 장애를 비롯한 한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임상 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하한 시설 내지는 그 일부를 의미한다.

3.6 **적절한 유지·관리 및 검사.** 최종사용자와 더불어 그 피허가자들은 로봇바닥청소기가 로봇바닥청소기 지침에 따라서 유지·관리되고 작동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본건 소프트웨어와 자동화 기능을 사용한다. 위 지침에 따른 유지·관리 및 작동이란 (a) 작동에 앞서 스퀴지(squeegee)가 적절한 위치에 놓이고 세척되고, 액체가 채워져 있고, 로봇바닥청소기에 가해진 명백한 손상이 없는지 등 로봇바닥청소기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것과 (b) 수동 바닥청소기의 경우 적어도 업계 표준에 따른 유지·관리 및 정기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로봇바닥청소기는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합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3.7 **행동의 제한.** 최종사용자와 더불어 그 피허가자들은 (a) 로봇바닥청소기를 그 지침 상 금지된 사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b) 로봇바닥청소기 또는 본건 소프트웨어 또는 자동화

서비스 및 관련된 여하한 하드웨어 및 센서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변경하거나, 손상시키거나, (c) 로봇바닥청소기에 본건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기타 여하한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거나(다만,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가 허여된 본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브레인이 최종사용자에게 제공한 여하한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d) 로봇바닥청소기를 제외한 기타 여하한 하드웨어나 장치에 본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e) 승인된 환경 내에서의 일상적인 청소 기능을 넘어서 로봇바닥청소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본건 소프트웨어나 자동화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또는 (f) 자동화 서비스 또는 본건 소프트웨어의 합법적인 작동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해치려는 시도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로봇바닥청소기, 본건 소프트웨어, 자동화 서비스는 그 각각의 고장이 있을 시 사망, 대인 상해, 중대한 물리적 또는 재산상 손해로 직결될만한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되거나 계획된 것이 아니다.

4. 브레인이 부여하는 라이선스

4.1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브레인은 최종사용자에게, 제2조에 규정된 것과 같이 최종사용자가 자동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로열티가 없고, 재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해당 라이선스는 브레인 또는 테넌트가 최종사용자 및 피허가자에 한하여 (a) 최종사용자가 취득한 본건 소프트웨어가 사전에 로딩된 로봇바닥청소기 및 (b)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가에서 본건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다. 본 제4조에 언급된 “이용”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승인된 환경에서 로봇바닥청소기를 자동으로 조종하고 작동함에 있어 필요한 바에 따라 로봇바닥청소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본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4.2 본 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브레인 및 브레인의 사용허가권자들이 보유한다. 본 계약에 따라 본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최종사용자는 본건 소프트웨어를 본 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바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 최종사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를 본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본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 매도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계약은 최종사용자가 본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취득할 수 있는 여하한 패치나 업데이트, 그리고 최종사용자가 사용하는 여하한 로봇바닥청소기에 설치된 본건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된다.

- 4.3 최종사용자는 브레인과 그 계열회사와 사용권자들이 본건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여하한 지식 재산권을 비롯한 본건 소프트웨어(본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여하한 패치 및 업데이트와 그 제반 사본을 포함)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소유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한다.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 저작권법, 저작인격권, 영업비밀법, 상표법 및 기타 제반 재산상 권리에 따른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브레인은 최종사용자에게 분명하게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브레인의 본건 소프트웨어는 미국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과 협정, 그리고 최종사용자가 로봇바닥청소기를 구입 또는 사용하는 국가의 기타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
- 4.4 최종사용자는 미국의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과 협정, 저작권 지침 및 최종사용자가 로봇바닥청소기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국가의 기타 여하한 법률에 따라 (a) 본건 소프트웨어나 본건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을 복제, 변경, 개작, 재배포, 역(逆)컴파일, 역(逆)설계, 분해하거나, 이차저작물을 생성하거나, (b) (최종사용자에게 제공된 로봇바닥청소기를 제외한) 여하한 소프트웨어나 장치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를 판매, 임대, 리스, 라이선스 부여, 배포하거나 달리 양도, 상업화하거나 그 제공을 제안하거나, (c) 본건 소프트웨어를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 4.5 최종사용자는 본건 소프트웨어 또는 로봇바닥청소기에 부착되거나 포함된 여하한 (특히, 저작권, 상표권 고지를 비롯한) 재산상 권리에 대한 고지를 제거하거나, 가리거나, 변경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브레인의 상호, 상표, 서비스마크, 로고, 도메인 네임, 또는 그 일부, 또는 특유의 브랜드 특성에 관한 권리를 최종사용자에게 부여하지 아니한다.

5.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정보

브레인은, 브레인의 제품을 계속해서 혁신하고,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최종사용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브레인의 데이터정책(www.braincorporation.com/data-privacy에서 확인 가능, 수시로 브레인에 의해 업데이트 될 수 있음)에 규정된 것을 비롯하여 최종사용자의 특정한 상황과 관련한 한도에서 본건 소프트웨어 또는 로봇바닥청소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최종사용자는 국가 또는 지역별로 본 계약에 따라 브레인이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제한이나 동의, 책임 또는 권리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추가 약관은 <https://www.braincorp.com/data-protection-addendum/>에서 확인 가능하다.

6. 본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아래 명시된 것과 같이 최종사용자, 테넌트 또는 브레인에 의하여 해지될 때까지 계속해서 적용된다.

- 6.1 브레인이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고 최종사용자에게서 해당 위반에 대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 위반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 최종사용자는 본건 소프트웨어 및 자동화 기능의 이용을 온전히 중단하는 것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최종사용자는 브레인 또는 테넌트와 체결한 관련 서비스 서류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자동화 서비스를 별도로 해지할 것을 요구 받을 수도 있다.
- 6.2 테넌트 또는 브레인은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허용된 한도에서 언제든지, (a) 최종사용자가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고 테넌트 또는 브레인에게서 해당 위반에 대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 위반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 또는 (b) 테넌트 또는 브레인이 법률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 받을 경우, 최종사용자와의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종사용자가 본 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본건 소프트웨어, 자동화 서비스 또는 자동화 기능을 사용할 경우, 자동화 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본 계약에 따른 최종사용자의 사용권은 즉시, 자동으로 중단된다.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사용자, 테넌트, 브레인이 본 계약에 따라 향유했거나, 적용을 받았거나(또는 본 계약의 효력이 있을 동안 누적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무기한으로 계속될 것이 명시적으로 표명된 모든 법적 권리, 의무 및 책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해당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는 제10.4조 규정이 계속하여 무기한으로 적용된다.

7. 보증

브레인은 본건 소프트웨어가 (a) 로봇바닥청소기의 당시 효력 있는 사용자 매뉴얼에 실질적으로 부합한다는 것과, (b) 이용 제한 규정의 적용 하에, 최종사용자의 자동화 서비스 구독 기간 동안 각 로봇바닥청소기에 대해 브레인이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동하는 자동 항법 기능을 제공할 것과, (c) 최종사용자가 이용 제한 규정에 따라 본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어떠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브레인이 전술한 보증 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최종사용자가 서면 통지를 하였음에도 브레인이 해당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해당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 로봇바닥청소기의 최종사용자에게 본 제7조 위반에 대하여 제공되는 유일한 구제 수단은 해당 로봇바닥청소기를 위한 자동화 서비스의 해지 및 해당 로봇바닥청소기를 위해 최종사용자가 구독한 자동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최종사용자가 지급한 요금을 잔여 계약 기간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환불해 주는 것뿐이다. 브레인은 여하한 법률, 규정 또는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본 제7조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상품성,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 및 침해 금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체의 명시적, 묵시적 보증을 한 사실 일체를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8. 책임의 제한

최종사용자는 본 계약에 따라 최종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간접적, 부수적, 특별,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브레인 또는 그 대리인들이 조언을 받았거나 그러한 손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브레인과 그 자회사, 계열회사 및 사용권자들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로봇바닥청소기, 자동화 서비스 또는 자동화 기능 관련하여 혹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들(claims)에 대하여 브레인이 최종사용자에게 부담하는 총 책임의 수액은 500,000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책임 제한은 브레인의 중과실이나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상해나 최종사용자가 로봇바닥청소기를 구입한 관할권의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 기타 의무적 법적 책임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본 계약의 수정

테넌트와 브레인은 언제든지 수시로, 안전을 위해 요구되거나, 법률이나 정부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요구되거나, 최종사용자가 본건 소프트웨어, 자동화 서비스 또는 자동화 기능 이용에 있어 로봇바닥청소기를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규 또는 추가 규칙, 정책 내용 또는 조건(통틀어서 “추가 조건”)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계약을 업데이트, 수정, 보완 및 종전과 달리 변경하거나, 나아가 추가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보유한다. 추가 조건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본 계약의 일부로 포함된다. 최종사용자가 테넌트에게 제공한 우편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로 여하한 추가 조건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최종사용자가 계속해서 본건 소프트웨어, 자동화 서비스 또는 자동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최종사용자가 해당 추가 조건을 전부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추가 조건은 참조되어 본 계약의 일부로 포함된다.

10. 일반 법적 조건

10.1 어떠한 서비스 서류, 구매주문서, 벤더업체계약, 연장된 서비스 계약,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포함된 본건 소프트웨어, 자동화 서비스 또는 자동화 기능에 관한 약정(본 계약상 명시적으로 인정한 약정은 제외)은 브레인과 서면 합의한 것이 아닌 한 무효이고, 해당 법률문서와 본 계약 간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본 계약 조건이 우선한다. 본 계약 및 본 계약을 언급한 것으로서 최종사용자와 브레인이 서명을 한 기타 법률 문서(본 계약과 기타 법률 문서를 통틀어서 “계약문서”)는 최종사용자와 브레인 사이의 온전한 법적인 계약을 구성하고, 최종사용자가 본건 소프트웨어, 자동화 서비스, 자동화 기능을 이용함에 있어 이에 관하여 규율하며(브레인이 별도 서면 계약에 따라 최종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하한 서비스는 제외), 본건 소프트웨어에 관련하여 최종사용자와 브레인 사이에 체결된 여하한 사전 계약들을 온전히 대체한다. 최종사용자는 계약문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에 따

라 브레인이 향유하는 여하한 법적 권리나 구제수단을 브레인이 행사하거나 실행하지 않더라도, 브레인이 각 해당 권리를 공식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브레인이 해당 권리와 구제수단을 계속하여 가진다는 것에 동의한다. 본 사항에 관하여 판단할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계약문서의 어떠한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규정은 계약문서의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본 계약에서 제외된다. 계약문서의 나머지 규정들은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 본 계약은 자동 항법 소프트웨어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으로서 역할을 하고, 로봇바닥청소기의 사용자 지침 및 브레인 또는 테넌트의 기타 서류에 참조로 언급될 수 있다.

10.2 본건 소프트웨어는 미국 수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최종사용자는 로봇바닥청소기가 인도된 관할지의 수출 및 재수출 규제 및 규정을 비롯하여 관련 모든 국내 및 국제 수출 및 재수출 관련 규제 및 규정을 준수할 것과, 본건 소프트웨어, 자동화 서비스 또는 자동화 기능을 금지된 국가로 양도하거나 그러한 양도를 승인하지 않을 것과, 달리 위 관련 규제 및 규정을 위반하는 양도를 하거나 그러한 양도를 승인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10.3 최종사용자는 계약문서상 부여된 권리들을 브레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최종사용자는 계약문서에 따른 최종사용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브레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어떠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10.4 계약문서의 어떠한 규정이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문서의 나머지 규정들은 계속해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

10.5 계약문서는 영국 및 웨일스 법률에 따라서 규율되고 해석된다.

10.6 여하한 분쟁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 요청을 한 후 14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법인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법인 대표(이하 “**관리이사 등**”)에게 우선 고지되어야 한다. 해당 법인장 등은 신의성실하게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논의한다. 관리이사 등이 상호 합의한 최종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법인장이 해당 문제를 처음 고지 받은 후 10 영업일(또는 법인장들 사이에 상호 협의를 한 기타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해결책에 대해 서로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분쟁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규칙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서 진행되는 중재를 통해 최종 해결한다. 다만,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규칙이 본 계약의 규정과 상충될 경우에는 본 계약의 규정들이 우선한다. 중재 언어는 영어이고 중재 장소 또는 법정지는 싱가포르이다. 당사자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고 이미 공유의 정보가 되었거나 어떠한 판정문 집행을 위해 공개가 요구되거나, 중재를 돕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금지명령

구제를 위해 요구되는 경우(이 경우, 각 당사자는 여하한 중재 절차 계속 중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피하거나, 현상을 유지하거나, 중재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 여하한 관할 법원에 적절한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를 제외하고, 중재의 존재, 중재 절차, 당사자들의 제출물, 그리고 중재관정을 비롯한 중재관정부의 결정에 대해 기밀을 유지한다. 신청인이 구하는 총 손해배상금이 1,500,000 싱가포르 달러 미만이고, 피신청인/반소인이 구하는 총 손해배상금이 1,500,000 싱가포르 달러 미만이며, 어떠한 당사자도 형평법상의 구제를 구하지 않는 한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인 수를 1명으로 한다. 중재인이 3명일 경우, 각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그 답변서와 반소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중재인을 각각 선임한다. 이어서 양 당사자 각자가 지정한 중재인들은 두 번째 당사자가 지정한 중재인 선임 후 15일 이내에 중재인 의장 역할을 할 사람 1인을 선임한다. 중재인이 1명일 경우, 중재인은 피신청인이 그 답변서와 여하한 반소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들 간에 상호 합의하여 선임한다. 위 기간 내에 중재인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는 선임되지 않은 중재인을 선임한다. 각 중재인은 변호사 25인 이상이 속한 로펌 혹은 기업법이나 소송 부서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이거나 관할법원 판사였던 적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